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57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주철현·허 영·황운하

조계원 • 조인철 • 어기구

안호영 · 진성준 · 송기헌

박균택 • 이병진 • 위성곤

문대림 • 문금주 • 김문수

천하람 • 한정애 의원

(179]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,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.

그러나 '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'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, 특히 「군형법」상 반란죄와 「형법」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·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,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

여 압수·수색하거나 체포·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되는 사실이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.

제13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10조제1항에 따른 장소의 책임자의 승낙은 요하지 아니한다.

제200조의6 전단 중 "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"을 "제101조제4항,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137조 후단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第110條(軍事上 秘密과 押收) ① 第110條(軍事上 秘密과 押收)① • ② (생 략)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<신 설> 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「군형 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<u>죄 및 같은</u>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자 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. 第137條(拘束令狀執行과 搜索)檢 第137條(拘束令狀執行과 搜索) --事.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 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 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 여 他人의 住居, 看守者있는 家 屋, 建造物, 航空機,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 다. <후단 신설> --. 이 경우 제110조제1항에 따 른 장소의 책임자의 승낙은 요

第200條의6(準用規定) 제75조,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, 第82條, 第83條, 第85條第1項・第3項 및 第4項, 제86조, 제87조,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, 제93조,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. 이경우 "拘束"은 이를 "逮捕"로, "拘束令狀"은 이를 "逮捕令狀"으로 본다.

<u>하지 아니한다.</u>
第200條의6(準用規定)
-1] 101 그 리 4호 -1] 100 그 리 0
<u>제101조제4항, 제102조제2</u> 항 단서 및 제137조 후단은
<u> 영 단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